빠쁜<mark>♥ ┕량진캠퍼스</sub> 매일정리노트(O,X)</mark>

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1회 (1/07)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만이다. 시장·군수는 기초자치단체이므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 ()
2.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동일하다. ()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전투만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4.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에 한한다. ()
6.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
	광역계획권이 2이상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의회 및 시장·균수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광역도시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기초조사·의견청취·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10.	.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12.	.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ㅇ 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
13.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계획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계획이다. 따라서 상하 위계질서에 의하여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지침을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

14.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과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께쌛♥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O,X)

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1회 (1/07)

- 15.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 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해제된다. ()
- 16.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매일정리노트(O, X) 정답

- 1. (X) 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장.군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X)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이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군수,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지정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만 갖는다.
- 3. (X)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일부를 지정할 때에는 "구・군・읍・면"이 최소 단위로 하여 지정한다.
- 4. (X)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광역, 기본, 종합은 비구속적계획이므로 당연 구속력이 나에게 없으니 그 계획 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 할 수 없다.
- 5. (X) 수립권자는 시장.군수,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개정부분 확인 바란다. 틀린지문이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②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 수립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 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공동수립
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 , 시장·군수 공동수립

- 6. (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단, 협의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다.
- 7. (X) 협의가 성립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권고 하고 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 8. (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시・도의회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9. (X)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 및 심의와 관련된 생략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생략이 가능한 계획은 도 시.군관리계획임에 유의할 것.



께썐^ル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O.X)

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1회 (1/07)

- 10. (X)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규정이 없다. 도시계획만 타당성검토규정이 있고 참고로 정비법상 도시정비기본계 획도 5년마다 타당성검토의 규정이 있다.
- 11. (X)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항상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 등만 "국토교통부령"이다.
- 12. (X) 혐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조정한다. 여기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 획 관련,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 수립 하다.
- 13. (O)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적 계획이다. 없으면 비구속적계획으로 정확한 지문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다. 자주 읽어두기 바란다.
- 14. (X)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된 이후에 광역도시계 획을 수립하므로 당연히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자주 언급되는 지문이다.
- 15. (X) 3년 이내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 획을 수립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16. (O) 가장 잘 나오던 지문으로 맞는 지문이다. "광역계획권"을 특·광·특.특.시.군으로 자주 바꾸어 출제가 된 다.